

#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수빈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349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6년 02월 09일

발 의 자: 박수빈, 강석주, 김성준,  
김원태, 김인제, 박강산,  
박승진, 박철성, 송도호,  
아이수루, 왕정순, 윤종복,  
, 이승미, 이영실, 임규호,  
임종국, 최기찬, 황유정  
의원(18명)

## 1. 제안이유

- 서울시 부속의원(의무실, 치과, 한의원)은 진료, 처방, 예방접종, 건강상담, 물리치료 등 1차 진료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직원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- 현재 부속의원의 이용 대상은 관련 법령·조례에 따라 서울시 소속 공무원, 청원경찰, 공무직, 시의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. 이로 인해 타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이나 사회복지무요원은 서울시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속의원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기본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- 이에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무요원과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도 부속의원 진료 등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실질적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형평성 있는 후생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사회복지무요원 및 파견 공무원의 부속의원 이용 근거 조항 신설(안 제 3조제4항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 
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##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”를 “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“서울특별시”를 “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서울특별시에”를 “시에”로, “대하여도”를 “대해서도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, 사회복지무요원 등에 대해서도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적용범위) ① 이 조례는 <u>서울특별시</u>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시장이 제8조에 따른 <u>서울특별시</u> 후생복지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</p> <p>③ 시장은 <u>서울특별시에</u> 근무 중인 청원경찰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.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3조(적용범위) ① ----- <u>서울특별시</u> <u>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</u> ----- 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<u>시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③ ----- <u>시에</u> ----- ----- - <u>대해서도</u> ----- -----.</p> <p>④ 시장은 <u>시에</u> 근무 중인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, 사회복지무원 등에 대해서도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.</p>

#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소속이 아닌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사회복무요원의 경우, 서울시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속의원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진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므로 부속의원 이용 등 일정 범위의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실질적인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형평성있는 후생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본청에서 근무하는 타 기관 소속 공무원(20명)과 사회복무요원(10명)을 서울시 부속의원 이용 대상에 포함하더라도 현재 이용대상 규모<sup>1)</sup>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비용발생은 거의 없을 것이므로 비용추계대상에서 제외함

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     이 선 희

추계세제팀장      김 중 헌

추 계 분 석 관      김 경 명

☎ 02-2180-7954

e-mail : kimkmi0809@seoul.go.kr

**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**

1) 부속의원 이용 대상은 2025년 12월 현재 서울시 소속 공무원, 청원경찰, 공무원직, 시의원 등으로 약 13,000명임